

기관명
(전화번호)

시행일자:

문서번호

받음: 해양수산부장관

보냄: 시·도지사 [인]

제목: 부담금 부과·징수실적 보고서(년 분기)

「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에 따라 해양심층수 이용부담금의 부과 및 징수실적을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.

1. 먹는해양심층수

업체명 (대표자)	용량규격별(ℓ)	생산량 (개수)	판매량 (개수)	판매액 (원)	부과액 (원)	징수액 (원)
계						
	소계					
	소계					

2. 해양심층수(처리수 포함)

업체명 (대표자)	업종	해양심층수 판매량(톤)	해양심층수 판매액(원)	부과액 (원)	징수액 (원)

※ 해양심층수 판매량 및 해양심층수 판매액에는 처리수의 판매량과 판매액을 합산하여 적습니다.